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연구 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6.9.)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실증특례 신청 대상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실증특례 관련 법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며,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포함시키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제8조제2항제10호 신설)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추가함.

나. 실증특례 신청 자격 범위 수정(제19조의2 신설)

실증특례 신청 자격의 범위를 공공연구기관과,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신청하는 연구소기업, 공공기술을 실증하려는 기업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술을 실증하려는 다양한 성격의 주체가 실증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실증특례 관련 법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제44조 관련 별표 9 개정)

실증특례의 부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실증특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배상방안 마련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실증특례 관련 절차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을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중소벤처기업부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9. 24. ~ 11. 3.) 완료

3) 재입법예고(2020. 10. 19. ~ 11. 3.) 완료

4) 재입법예고(2021. 2. 19. ~ 2. 22.)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실증특례의 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실증특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연구소, 교육시설, 본사, 영업소 또는 생산공장 등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본문에 따라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기관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실증하려는 중소기업. 이 경우 실증특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실증특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연구소, 교육시설, 본사, 영업소
또는 생산공장 등 중소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구개발특구에 있
는 중소기업

별표 9 제2호에 다~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다. 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호	3백5십만원 7백만원 1천만원
라. 법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제출하지 않은 기간인 30일 이하인 경우 2) 제출하지 않은 기간인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 제출하지 않은 기간인 60일 초과인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2호	3백5십만원 7백만원 1천만원
마. 법 제1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법 제76조제2항제3호	

경우 1)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3백5십만원
2)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7백만원
3)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1천만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제8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 ----- ----- ----- -----.
1. ~ 9. (생략)	1. ~ 9. (생략)
<u>< 신 설 ></u>	<u>10. 중소벤처기업부차관</u>
<u>< 신 설 ></u>	<u>제19조의2(실증특례의 신청) ①</u> <u>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실증특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연구소, 교육시설, 본사, 영업소 또는 생산공장 등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기관을 말한다.</u>
	<u>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본문에 따라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기관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u>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실
증하려는 중소기업. 이 경우 실
증특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실증특례를 신청한 날을 기
준으로 연구소, 교육시설, 본사,
영업소 또는 생산공장 등 중소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구
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 락 처	044-202-4743